

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1. 3. 5
- 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1. 3. 5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8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1. 3. 1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예술과장 강덕면)

가. 제안이유

- 부천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향유와 참여를 지원키 위해 현재의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를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,
- 문화도시 부천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 발전 및 문화 창조 역량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법인 설립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함(안 제3조)
- 법인의 사업 범위(안 제4조)
- 법인의 기본재산은 부천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익사업으로 조성하며 시설, 운영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(안 제5조)
- 법인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(안 제7조)
- 법인의 사업 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연도에 의한다(안 제11조)
- 법인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(안 제16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문화사업본부에서 대두되는 중점적인 문제는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질적인 주차사업과 문화사업의 공존으로 수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양면성 때문에 효율성 저하 ○ 정책 결정의 논의구조가 비효율적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차사업과 문화사업의 전문성저하 ○ 직원화합반목

- 유사 재단 중 일반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례는?
- 재단법인으로 전환시 포괄적 문화사업을 지향하며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했는데 현 체제로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?
- 구조조정이 되어 인원이 줄었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도 문화사업 운영이 가능한지?
- 현행 공단체계에서 문화사업팀의 보수를 현실화할 수 있는지?
- 재단으로 전환시 의회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?

- 이질적인 업무로 타업무에 비해 관심도가 적음
- 운영재원의 한계
 - 공단 : 지방공기업상 시에서 100% 예산 지원만 가능하여 기타 기부금은 제한됨
 - 재단 : 시 지원금을 포함하여 기부금 등 민간자본금 유치 가능
- 서울시 예술의전당이 전체 운영예산의 11%를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범위와 액수가 미미함
- 현행 시스템에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좀더 나은 대안 및 발전적인 방안이 법인이라 판단되었음
- 가능함
- 불가능함
- 가능함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지난 99년도에 시설관리공단조례가 제정될 때부터 주차사업본부와 문화사업본부의 이질적인 업무를 하나의 공단으로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으며, 문화사업본부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음
- 그러므로 부천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운영의 합리화 및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사업본부는 재단으로 분리되어야 함
- 재단으로 분리 시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운영상의 자율성·독립성을 보장하고 의회에서는 예산·조사·감사 기능으로 통제를 하며 재단으로 전환된 후 문제점을 검토, 개선하는 것도 바람직함

나. 반대토론

- 재단으로 전환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의 최선책이 아님
- 현 체제에서 조직내부의 문제점에 대한 자구책 마련 등 내부적인 대안을 더욱 개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면 문화사업본부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됨

- 재단으로 전환될 경우 의회의 통제기능이 약화되어 재단을 견제하기가 어려울 것이며, 문화재단이 부천의 모든 문화사업을 관장하고 총괄한다고 볼 수가 없음

5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6. 수정안 요지

- 별 첨

7. 소수의견요지

-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관련 제448호
의결년월일	2001. 3. 14 (제85회)

제출년월일 : 2001. 3. 13

제 출 자 : 행정복지위원장

수정이유

-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 제고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참여와 관심을 주기 위하여는 문화재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
- 재단 내의 자율성 및 독립성 부여에 따라 재단의 독단, 독선을 견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통제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문화도시 부천의 정체성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법인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 의회 동의 추가(안 제6조2항)
- 상임이사 임명시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추가(안 제7조3항)
- 이사회의 구성 신설(안 제8조)
- 사업계획 제출시 의회에 제출토록 명시(안 제12조)
- 법인의 경영사항에 대한 보고·검사·감사 항목을 필수 사항으로 추가 삽입(안 제16조)

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법인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

어야 한다.

안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⑤상임이사·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.

②다음 각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.

1. 시장
2.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
3. 한국예총부천시부장
4. 부천문화원장
5. 부천시 복지환경국장

③선임직 이사는 부천시의회 추천위원 1인과 한국예총부천시부 및 문화원 추천인사 각 1인을 포함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 의 선입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.

안 제8조(이사회)를 제9조(이사회 운영)로 한다.

안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.

안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.

안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.

안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, "받아야 한다"를 "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안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, "시장에게"를 "시장 및 의회에"로 한다.

안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.

안 제15조(보고 및 검사)를 제16조(보고·검사·감사)로 하고,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시장 및 시의회가 법인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·검사·감사를 요청시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안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.

안 제17조를 제18조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6조(정관) ①(생략) ②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<u>사</u> <u>전에</u>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	제6조(정관) ①(제정안과 같음) ②..... <u>제정 또는 변경하고자</u> <u>사</u> <u>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</u>
제7조(임원) ①(생략) ②(생략)	제7조(임원) ①(제정안과 같음) ②(제정안과 같음)

③상임이사·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④(생략)

(신설)

(신설)

제8조(이사회)

제9조(감사)

제10조(운영재원 등)

제11조(사업연도)

제12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법인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13조(결산서의 제출)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 등)

제15조(보고 및 검사) ①시장 및 시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법인의 경영사항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③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시장이 임명한다.

④(제정안과 같음)

⑤상임이사·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8조(이사회)의 구성) ①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.

②다음 각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.

1. 시장

2.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

3. 한국예총부천시부장

4. 부천문화원장

5. 부천시 복지환경국장

③선임직 이사는 부천시의회 추천위원 1인과 한국예총부천시부 및 문화원 추천인사 각 1인을 포함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선임에 의하여 이시장이 위촉한다.

제9조(이사회)의 운영)

제10조(감사)

제11조(운영재원 등)

제12조(사업연도)

제13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.....
.....
.....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.....

제14조(결산서의 제출).....
.....
.....시장 및 의회에.....

제15조(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 등)

제16조(보고·검사·감사) ①시장 및 의회가 법인의 경영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·검사·감사를 요청시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(생략) 제16조(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) 제17조(규칙)	②(제정안과 같음) 제17조(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) 제18조(규칙)
---	--

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

의안번호	관련 제448호
의결년월일	2001. 3. 14 (제85회)

제출년월일 : 2001. 3. 5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부천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향유와 참여를 지원키 위해 현재의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를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
- 문화도시 부천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 발전 및 문화창조 역량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법인 설립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(안 제3조)
- 법인의 사업 범위(안 제4조)
- 법인의 기본재산은 부천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익사업으로 조성하며 시설·운영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(안 제5조)
- 법인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(안 제7조)
- 법인의 사업 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연도에 의한다(안 제11조)
- 법인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(안 제16조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복지의 증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부천시문화재단(이하 "법인"이라 한다)을 설립하고,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

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설립) 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제4조(대상 사업) 법인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부천시북사골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
2. 부천시시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
3.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, 관리, 보급과 조사연구
4.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부천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

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 ①법인의 기본재산은 부천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②시는 법인의 설립·시설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.

제6조(정관) ①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4.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
5. 이사회에 관한 사항
6.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
7. 공고에 관한 사항
8. 사업에 관한 사항
9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②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7조(임원) ①법인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.

②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.

③상임이사·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④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제8조(이사회) ①법인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
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회 회무를 통할하며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감사) 감사는 법인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재원 등) 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, 법인사업 수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11조(사업연도) 법인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.

제12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법인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13조(결산서의 제출)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 등) 시장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다.

제15조(보고 및 검사) ①시장 및 시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법인의 경영사항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6조(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) 시장은 법인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17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